

의안번호	2216506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6.7.8.
추 계 번 호	26B05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32억원, 2031년 223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1,146억원(연평균 229억원)으로 추계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232	232	231	228	223	1,146	229

주: 1. 추계금액은 경장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 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제1항)	의무규정
		배우자 출산휴가는 <u>횟수에 상관없이</u>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2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2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제6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u>2년</u>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3	안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u>13세 미만</u>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의무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u>2년</u>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제4항)	의무규정
4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사업주는 <u>13세 미만</u>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 공식추계(제1항)
		×	• 미첨부(제4항 및 제6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최소 2주 이상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질은 동일하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이 확대될 유인이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용절차 및 행태 변화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의 증가 규모를 추계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장래의 행태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
2	안 제19조(육아휴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3	안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미대상(제1항) - 현행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2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4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 미대상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지원을 위하여 업무 시작·종료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운영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사업주의 육아지원 조치 대상 연령을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임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의무 제도에 적용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이는 사업주에 대한 권고적 성격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배우자출산휴가(안 제18조의2)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6조²⁾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함
-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
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추가 지급기간과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대상자 수는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망(2025~2045년)에 수록된 출생아 수 전망치에 2025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9.6%)을 적용하여 산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표 2] 출생아 수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출생아 수(A)	260,562	249,186	230,028	238,317	254,45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B)	18,270	16,168	15,797	18,241	24,412
비율(C=B/A×100)	7.0%	6.5%	6.9%	7.7%	9.6%

주: 2025년 출생아 수는 잠정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고용노동부

[표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A, 천명)	287	287	286	282	27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B=A×9.6%, 명)	27,534	27,534	27,438	27,054	26,479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NABO 인구전망(2025~2045년)을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가지급기간) 10일(개정안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차이)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사용대상자가 개정안의 시행으로 증가한 추가 지급기간(10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수 있겠으나,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추계서는 사업대상자가 추가지급기간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2025년 2월 지급기간(10일→20일), 신청기한(90일→120일) 및 분할 사용 횟수(1회→3회)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아직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실제 사용기간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나, 본 추계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 (지급단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단가는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684,210원/20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산출

-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단가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32억원, 2031년 223억원으로 추계됨

[표 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A, 명)	27,534	27,534	27,438	27,054	26,479
추가지급기간(B, 일)	10	10	10	10	10
지급단가(C, 원)	84,211	84,211	84,211	84,211	84,211
추가재정소요(D=A×B×C)	232	232	231	228	223

주: 1. 주계급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주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주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육아휴직(안 제19조)

□ (안 제19조제1항)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임

○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³⁾,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학령기 아동에 대한 육아휴직의 사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육아휴직의 평균 사용기간은 2025년 기준 8.6개월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⁴⁾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4)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표 5] 육아휴직의 평균 사용기간

(단위: 개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육아휴직	9.5	9.0	8.9	8.7	8.6

자료: 고용노동부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의 이유로 추계하기 곤란
 - 첫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령기 아동을 키우는 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학령기 아동의 육아휴직 수요를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함
 -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의 사용기간 및 수급자 수 등에 대한 정보는 영유아 및 저학령 아동을 키우는 근로자에 대한 자료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추산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모집단의 정보를 왜곡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에 따른 “추가 사용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육아휴직의 사용인원 및 사용일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증가 규모를 사전에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 (안 제19조제2항)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이며,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임
 - 육아휴직의 평균 사용기간은 2025년 기준 8.6개월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의 평균 사용기간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6] 육아휴직의 평균 사용기간

(단위: 개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육아휴직	9.5	9.0	8.9	8.7	8.6

자료: 고용노동부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행태변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안 제19조의2제2항)

-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유인이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이며,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고용보험법」 제73조의2⁵⁾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유인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나, 현시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인원 및 사용일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증가 규모를 사전에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표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평균 사용기간

(단위: 개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4	9.4	9.3	9.0	9.8

자료: 고용노동부

5)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주요 전제와 실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등이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과 NABO 인구전망(2025~2045년)에 수록된 출생아 수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비중 등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일정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 참고자료 I

- (사업대상자 수)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육아휴직 사업대상자 수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

[부표 1]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2021~2025년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육아휴직 수급자 수	110,555	131,087	126,008	132,535	184,329
남성	29,041	37,885	35,336	41,829	67,200
여성	81,514	93,202	90,672	90,706	117,129

자료: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수급자 수

- (여성) 추계기간 동안 여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에 4년간(2021~2024년)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3.6%)을 적용하여 산출
- 2025년의 경우 모성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 규모가 전년 대비 급증하였으므로 2025년 실적은 제외하고 산출
- (남성) 추계기간 동안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025년 기준 여성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수의 비중(57.4%)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부표 2] 육아휴직 수급자 수 전망(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육아휴직	남성	72,161	74,778	77,489	80,299	83,210
	여성	125,777	130,337	135,063	139,960	145,035
	합계	197,938	205,115	212,552	220,259	228,245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제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본 참고자료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육아휴직의 잠재적 수요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사용행태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본 참고자료는 사용대상 확대라는 제도변화에 따라 증가할 육아휴직의 사용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9년) 대비 개정안에 따른 증가 기간(4년)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부표 3]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전망(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수급자 수	87,973	91,162	94,468	97,893	101,442

주: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2025년 기준 월평균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1인당 지원단가) 연간 재정소요액을 지급인원으로 나누고, 이를 평균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산출
 - ※ 집행액: 3조 6,292억원(2025년 기준)
 - ※ 지급인원: 184,359명(2025년 기준)
 - ※ 지급기간: 8.6개월(2025년 기준)
 - 지원단가는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특성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1인당 지원단가가 명목임금 상승률을 토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지원기간) 2025년 기준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8.6개월이며, 육아휴직의 사용대상 확대에 따른 실제 사용기간은 현재의 사용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부표 4] 육아휴직 연령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수급자 수(A, 명)	87,973	91,162	94,468	97,893	101,442	—	—
월평균 지원단가(B, 백만원)	2.44	2.52	2.60	2.69	2.78	—	—
지급기간(C, 개월)	8.6	8.6	8.6	8.6	8.6	—	—
추가재정소요(D=A×B×C, 억원)	18,477	19,772	21,159	22,641	24,227	106,276	21,255

주: 1. 위 도표는 기준선(base-line)이 차감된 추가재정소요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장래에 발생할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4. 추계기간 동안 임금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러나 이러한 추가재정소요는 학령기 아동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의 사용대상 확대가 기존 수급자 수 및 수급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행태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II

□ 육아휴직의 사용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 전망치에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육아휴직 사업대상자 수는 최근(2021~2025년) 사용현황([부표 1])을 토대로 산출([부표 2] 참조)
 - 기존 육아휴직을 최대로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수급자 수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을 11개월 이상을 사용한 근로자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부표 5] 육아휴직 수급자 수 전망(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육아휴직	197,938	205,115	212,552	220,259	228,245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수급자 수	103,134	106,873	110,748	114,764	118,925

주: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2025년 기준 월평균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참고자료 I 참조)
- (지원기간)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급자의 추가사용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본 참고자료는 2019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수급기간이 1년 확대되었을 때의 사용기간 증가량(2개월⁶⁾)을 적용하여 산출

[부표 6]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수급자 수(A, 명)	103,134	106,873	110,748	114,764	118,925	—	—
월평균 지원단가(B, 백만원)	2.44	2.52	2.60	2.69	2.78	—	—
지급기간(C, 개월)	2	2	2	2	2	—	—
추가재정소요(D=A×B×C, 억원)	5,037	5,391	5,769	6,173	6,605	28,975	5,795

주: 1. 위 도표는 기준선(base-line)이 차감된 추가재정소요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4. 추계기간 동안 임금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고용노동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4.

- 그러나 이러한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화를 토대로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모집단의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이 확대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사용기간이 현재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III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 전망치에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대상자 수는 최근(2021~2025년)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

[부표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수: 2021~2025년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685	19,466	23,188	26,625	39,400

자료: 고용노동부

-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수는 4년간(2021~2024년) 연평균 증가율(16.9%)을 적용하여 산출
- 2025년의 경우 모성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규모가 전년 대비 급증하였으므로 2025년 실적은 제외하고 산출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로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수급자 수는 2025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1개월 이상을 사용한 근로자의 비중(50.4%)을 적용하여 산출

[부표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수 전망 I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3,803	62,872	73,471	85,856	100,328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수급자 수	27,131	31,704	37,049	43,294	50,592

주: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지원단가는 2025년 예산상 월평균 지원단가(63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지원기간)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급자의 추가 사용기간을 추정하기 곤란하나, 본 참고자료는 2019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수급기간이 1년 확대되었을 때의 사용기간 증가량(2개월⁷⁾)을 적용하여 산출

[부표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수급자 수(A, 명)	27,131	31,704	37,049	43,294	50,592	—	—
월평균 지원단가(B, 백만원)	0.65	0.67	0.69	0.72	0.74	—	—
지급기간(C, 개월)	2	2	2	2	2	—	—
추가재정소요(D=A×B×C, 억원)	353	426	514	621	749	2,663	533

주: 1. 위 도표는 기준선(base-line)이 차감된 추가재정소요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4. 추계기간 동안 임금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러나 이러한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화를 토대로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모집단의 정보를 왜곡할 여지가 있으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확대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사용기간이 현재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7) 고용노동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4.